

# 복리후생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【목적】** 본 규정은 당사 임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의 복지향상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【적용범위】** 회사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.

## 제2장 안전과 보건

**제3조【안전과 보건】** 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【건강진단】**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**제5조【안전 및 위생관리】**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## 제3장 체 육

**제6조【직장체육진흥】**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7조【체육행사 등】** ①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직원의 체육 및 취미, 교양활동을 위한 회사내의 특별활동 및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회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체육 및 취미,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장소, 시설 및

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## 제4장 후생

**제8조【후생시설】**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종 후생시설을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【후생비 지급】**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대 및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【요양비 보조】**직원 및 그 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법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고 그 요양비(치료비 포함)를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1조【장학금 지급】**직원의 유치원 및 초, 중, 고,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【통근차량운행】**직원의 출·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하거나, 출근직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자가운전보조비 또는 출퇴근보조비를 지급받거나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·퇴근을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【주택대여】**①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가족동거 직원의 대하여는 당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사택이나 주택임차기준은 임직원주택대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4조【합숙소 설치】**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15조【피복대여】**①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법한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적용하게 하거나 피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장에 한하여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용할 수 있다.

**제16조【주거보조비 지급】**① 직원이 자녀교육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무연고지에 단신부임하는 경우 일정액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주거지역에 회사와 관련된 사택이나 기타 주거

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17조【경조금의 지급】**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경조금지급규정에 따른다.

## 제5장 재해보상

**제18조【재해보상】**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6장 연월차 휴가보조금

**제19조【지급대상】** ① 휴가규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.  
② 퇴직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.

**제20조【지급기준】** 연월차휴가보상금은 일 8시간 기준으로 매 시간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## 〈부 칙〉

**제1조【시행일】** 본 규정의 시행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시행한다.